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4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
폐암검진 지원 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9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18.

기획재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서보영 의원 외 9명(박종길, 임미연, 박정환, 권숙자, 황국주, 강한곤, 이영빈, 장호섭, 김해철)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검토기간: 2025. 9. 4.(목) ~ 9. 10.(수)

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 등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급식실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폐암검진 주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 및 제4조의2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9. 3. ~ 9. 15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조리흡 등에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시키는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달서구는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구내식당 내에 환기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고, 급식종사자의 폐암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.
- 주요내용으로
 -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,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, 급식기구 설치 시 고려할 사항,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 -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폐암검진 주기를 2년으로 하고,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·가스·입자의 혼합물인 조리흡이 세계 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, 2021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.
- 우리 구청 내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 아울러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며,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〉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식품위생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1. (생략)

12. “집단급식소”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기숙사

나.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

다. 병원

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

마. 산업체

바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

사. 그 밖의 후생기관 등

13. ~ 15. (생략)

□ 산업안전보건법

제4조(정부의 책무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.

1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

2.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

3.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

4.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

5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·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

6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시설의 설치·운영

7.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·관리
8.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
9.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·증진

② (생략)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